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과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역별 구성(안 제14조)
- 나.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별지 1호)
- 다.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안 제3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검토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7 ~ (20일간)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부서 검토
 - 5) 부패영향평가 : 해당부서 검토

5. 조례 영향 평가

- 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독서문화활동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명시함으로써 동작구 도서관 캠페인 또는 행사 시 이용자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나.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독서문화활동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명시하는 등 도서관 관련 법령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제6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6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국장이 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권역별로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4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도서관자료 및 오손된 도서관자료는”를 “도서관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자료는”로 한다.

제35조 제목 “(문화활동의 전개)”를 “(문화활동의 진흥)”로 한다.

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민의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1.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개선

- 2. 독서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
- 3. 각종 독서단체 등 지원·육성
- 4. 그 밖의 지역주민 독서문화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18조 관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행사명				
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행사참가(예정)인원 명		
행사내용				
사용료	원	납부연월일	년 월 일	
<p>「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p> <p>○ ○ ○ 도서관장 귀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 라한다)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은 구관할구역 안에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p>	<p>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동작구</p> <p>-----</p> <p>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p> <p>-----</p> <p style="text-align: center;">소관국장</p> <p>-----</p> <p>② -----</p> <p>-----</p> <p>③ ~ ⑤ (생략) (현행과 같음)</p> <p>⑥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동작구</p> <p>-----</p> <p>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p>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 ⑦ (생략)
제21조(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 ① 1. ~ 2. (생략)
② 1. ~ 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 6. (생략)
- 제33조(도서관자료의교환·이관·상호대차·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 및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5조(문화활동의 전개) 도서관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8조 관련)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 권역별로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 ① 1. ~ 2. (현행과 같음)
② 1. ~ 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
5. ~ 6. (현행과 같음)
제33조(도서관자료의교환·이관·상호대차·폐기및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망가진
-
- 제35조(문화활동의 진흥) -----

----- 또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민의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독서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
3. 각종 독서단체 등 지원·육성
4. 그 밖의 지역주민 독서문화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8조 관련)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